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6 발의연월일: 2020. 11. 25.

발 의 자:김영식·김희곤·최형두

주호영・金炳旭・홍정민

허은아 • 태영호 • 박대출

박성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원급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급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하지"를 "신고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 1.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 2.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정보보호 감사 및 개선
- 3. 정보보호 취약점 및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정보보호대책 마련
- 4. 정보보호 교육 및 모의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제52조제3항제11호 중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을 "원인분석·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대응·협력 활동"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2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 중 "제47조제2항을"을 "제45조의3제3항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

지 아니한"을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	의 지정 등) ①
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위하여 <u>임원급의</u>	<u>대통령령으로</u>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	<u> 정하는 임원급의</u>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	
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u>.</u>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신고하지</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	4
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1.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u>관리·운영</u>	<u>및 개선</u>
2. <u>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u>	2.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
<u>및 개선</u>	<u>기적인 정보보호 감사 및 개</u>
	<u>선</u>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3. 정보보호 취약점 및 위험의

-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 · 구현 등
- 5. 6. (생략)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 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⑤ ~ ⑦ (생 략)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cdot ②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cdot ② (생 략)
 -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 1. ~ 10. (생략)
 -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 | 11. ------리 ·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u>운영</u>
 - 12. ~ 22. (생 략)
 - ④ ~ ⑦ (생 략)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 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 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1. ~ 6. (생 략)

- 식별·평가 및 정보보호대책 마련
- 4. 정보보호 교육 및 모의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6. (현행과 같음)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⑤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 ~ 10. (현행과 같음)
 - ----원인분석·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 · 대응 · 협력 활동
 - 12. ~ 22. (현행과 같음)
 - ④ ~ (7)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 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의3. <u>제47조제2항을</u> 위반하여 <u>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u> <u>지 아니한</u> 자

<u><신 설></u>

7.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6	의2
	<u>아니하거나 정</u>
	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
	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6	의3. <u>제45조의3제3항을</u>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
	의 다른 업무를 정보보호 최
	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
<u>6</u>	_ 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
	지 아니한 자
7	.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